###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20

발의연월일: 2024. 10. 25.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박덕흠

권성동 · 김선교 · 이양수

김기웅 • 구자근 • 정희용

권영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현재 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 로 전망됨.

또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이후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건비상승 등 농업 생산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후계농어업인 역시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농어촌 현실에 적응하지힘듦.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 농어업인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등의 혜택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을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밖의 경비를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의3(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를 적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u>①</u>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u>행정적</u> ·	<u>운영경</u>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
	<u>원할</u>
<u>&lt;신 설&gt;</u>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후계
	<u>농어업인 단체 활동을 지원·</u>
	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
	<u>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제12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지원・육
	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u>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제12조의3(조세감면 등) ① 정부
	는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하
	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

<u>다.</u>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후계농 어업인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 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 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